

소방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612호, 1993년 12월27일)

◇ 개정이유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던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그 시설주가 실시하도록 원칙적으로 자율화하고, 소방시설의 적합한 설치를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 호텔·의료기관·고층빌딩등의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커튼·카펫등 실내장식물에 방화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지시나

명령없이 1년이하의 징벌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관서장이 그 시정등을 명하도록 하고, 그 시정지시등에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함.(법 제11조제3항 제112조제1호)

나. 종전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방관서에서 직접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등을 실시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 제조소등의 관리를 자율화 함.(법 제17조의2)

다.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가 그 설계 및 시공감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설계자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제도를 신설함.(법 제65조의2 내지 제65조의9)

(법제처 제공)

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특수장소의 소방훈련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 또는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화·통보·피난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특수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 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되, 그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 3항후단을 삭제한다.

특수장소의 관계인 및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수장소의 경우에 한한다.

3.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화·통보·피난등의 훈련 및 교육

제11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있어서의 방염대상물품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것인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할 품목”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제조소등의 안전유지등)①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그 시설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구분 및 점검자의 자격·점검장비·점검방법·점검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3.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제33조제1항본문중 “용도변경의 공사중인 특수장소”를 “용도변경중인 특수장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 기존 특수장소가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중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을 적용한다.

제33조제2항제2호중 “소방시설관리사를 두어야 한다”를 “소방시설관리사를 두어야 하며, 직원중 소방시설점검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소방용기계·기구등”을 “소방용기계·기구등(수입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성능등”을 “성능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검정합격표시가 없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검정합격표시가 없거나 검정을 받은 후 그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내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거·교체·폐기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전단중 “면허의 갱신을 받지 못한 소방설비공사업자”를 “면허의 갱신을 받지 못한 소방설비공사업자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공사업자”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공사감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특수장소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위하여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중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의 지도를 받아 설계도서대로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는 제6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다.

제62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2(제65조의2 내지 제65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제65조의 2(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영업을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계업(이하 “소방시설설계업”이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이하 “소방공사감리업”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절차 및 설계·감리에 대한 수수료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

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6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65조의4(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① 소방시설설계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소방시설을 설계하거나 공사감리를 하되,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소방시설설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특수장소의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그 공사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④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이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자(그 공사의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로부터 시정통보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그 공사를 계속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공사감리계약을 취소하거나 공사감리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그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5(감리결과의 통보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시설의 공사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결과를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소방

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그 특수장소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의6(소방공사감리업자들의 공사제한) 동일인이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과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소방시설설계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동일한 특수장소(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건으로 허가동의된 특수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감리(설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께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중 1인이상이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을 하거나 소방공사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에도 그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공사감리자는 동일한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제65조의7(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 제19조·제65조의2제2항 및 제65조의3의 규정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제65조의8(영업의 휴업등) 제36조의 규정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휴업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65조의9(등록의 취소·영업정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고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2. 제65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65조의3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지정의뢰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설계·감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끼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때

제65조의10(감독)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소방시설감리가 완료된 특수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관계장부·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의용소방대의 경비)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그 대원의 임명권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09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

제1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호중 “검정합격표시가 없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을 “검정합격표시가 없거나 검정을 받은 후 그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 하며,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10. 제6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업을 한 사람

제114조에 제3호의 2 및 제10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소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10.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람
11.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설계 또는 감리를 허위로 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한 때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
12. 제6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13. 제65조의4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한 사람

14. 제65조의4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통보한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한 사람

15. 제65조의4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취소하거나 수수료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

16. 제65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리결과와 통보 또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니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한 사람

제11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제117조제1호중 “방화관리자(제9조제3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하는 관계인을 포함한다)”를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게을리한 사람

제119조제1항제1호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4항·제1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32조제2항”을 “제17조의2제3항 또는 제32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수시설을 변경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람
6. 제6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아니한 사람
7.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소방훈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소방용수·소화기구등의 설치명령에 위반한 사람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제65조의2 내지 제65조의10·제109조제11호·제112조제10호·제114조제10호 내지 제16호 및 제11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